

# 환 · 경 · 관 · 리 · 질 · 의 · 응 · 답

## PCBs 관련

Q

이번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금 아파트에 설치된 장비들은 신고 하였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는 설비 MOF(계기용변압변류기 : 유입식) 2대와 PT(유입식)장치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보니 이 설비들은 기타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에 해당되는데, 유입식 변압기는 사용하지 않는것은 폐기 처리 하라고 나오는데 기타 설비는 어떻게 처리 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꼭 폐기 처리 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폐기처리 업체도 울산같은 경우는 2ppm 이상 처리 업체만 한군데 있고 2ppm 이하 처리 업체는 없습니다. 폐기처리해야 한다면 이점도 조치 부탁드립니다.

A

절연유가 함유된 변압기류의 내용물 성분분석 결과가 PCBs를 1l 당 2mg 이상 함유한 것은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로 분류하여야 하며, 1l 에 2mg 미만인 것은, 절연유에는 기름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폐유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지정폐기물배출자는 폐유, PCBs함유 폐기물은 보관이 시작된 날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폐유, PCBs함유 폐기물은 자체처리하거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유, PCBs함유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합니다.

## 의료 폐기물 분류

Q

채혈 후 주사기에 남은 혈액은 조직물로 처리하고 주사기(벽에 조금 발려 있음)는 일반 의료 폐기물로 처리 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인지요?

병리과에서 혈액 검사등을 한 후 폐기되는 혈액이 발린 튜브등 시험용기의 처리는 어떤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A

혈액과 분리된 주사기, 튜브 등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사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는 손상성폐기물로, 배양용기, 배양균주 등은 병리계폐기물로 분류·관리하여야 합니다.

## 지정폐기물(폐유) 처리 관련

Q

당사는 2007년 10월 착공을 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건설현장입니다.

지정폐기물(폐유)가 월별 소량 배출되어 2008년 4월 25일 날짜로 530kg을 위탁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당사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연간 600kg으로 알고 서류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A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의 폐유 발생량을 질의와 같이 연간 600kg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이나, 발생량은 정확하게 산출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악취발생시 처분규정 문의

Q

당사는 비료등록업체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퇴비를 제조하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이며 규격품이 아닌 녹생토를 제조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얼마 전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에서 악취가 발생하면 행정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를 측정하여 기준초과 될 경우 처분을 하는데 이 경우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처리시설 관리기준 2.개별기준 가. 중간처리시설의기준 4)생물학적처리시설 가)의 (3)을 위반한 경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등을 받는지?
2. 아니면 악취방지법 위반으로 악취방지법에 의한 개선권고 등 처분을 받는지?
3. 상기 2가지의 처분을 모두 받아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업체는 악취발생 민원이 있어 점검을 받았으나, 허가 부분에 반입된 폐기물이 적정 보관시설에 보관되지 않고 부적정보관 되었다고 폐기물부적정보관으로 과태료처분과 경고 등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모두 적정보관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이 다시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허가 기관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마다 조금씩 다른 의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A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의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악취방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밖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제2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법 제30조에 따르면 제14조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신고방법문의

Q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절연유를 사용하는 전기시설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군구청에서 신고관련공문서를 접수 후에 하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가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계도기간 내지는 캠페인 같은 계획은 있는지요?

A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 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소유자는 신고관련 공문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행정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관련

Q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시 구비조건 중 차량이 서울시의 경우 5대(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삼차 장치가 부착된 차량)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구비된 차량(5대 - 암롤 2대, 덤프 3대)으로 영업하던 중 암롤트럭 2대를 타 차량으로(카고트럭 2.5톤) 변경하고 싶은데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처음 허가시 처럼 다른 차량 변경시에도 같은 종류의 차량으로 변경신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삼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중에서 자기에게 적합한 수집운반차량을 3대 이상(서울시의 경우 5대) 갖추면 됩니다. 아울러, 수집·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 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다른 차량(허가 기준에 규정된 차량외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예시: 허가받은 차량 3대, 허가를 받고자 하는 차량 1대일 경우 총 4대 중 2대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 가능)

## 황토흙 소성시설에 대한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 여부

Q

황토흙으로 벽돌모양을 성형한후 터널형소성로에 넣고 1200도 에서 24시간 정도 소성하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체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사업장에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시행령 별표2에 의거 바.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시설 중 황토를 소성하는 시설은 없음.)

대기배출시설 : 소성시설 142루베 1식

대기오염방지시설 : 원심력집진시설 280CMM 1 식

사용연료 : B-C유 1%

대기종별구분 : 1종 사업장

A

황토흡을 이용한 벽돌의 소성로는 2008년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제1호 사목 5)의 기타 비금속광물 소성·용융·용해시설에 해당되며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10,000 표준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일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입니다.

- 배기가스량은 상기 조항의 비고 (1)에 따라 부착대상시설의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서의 방지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방지시설의 용량은 표준상태(0℃, 1기압)로 환산한 값을 적용합니다.

## 의료폐기물 보관

Q

치아의 경우 관공서와 상의 해본 결과 부패 우려의 염려가 없는데 굳이 냉장 보관 등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견을 들은바, 환경부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관리 및 감독등을 할것이라 하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지요? 2007년과 같이 폐합성또는 탈지면류와 같이 보관하지 않더라도 손상성 폐기물과 같이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은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코나 가래 등을 흡입한 조직물류의 경우에도 치과의 경우는 하수로 방류되어 있게 되어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없지만 내과나 이비인후과의 경우에는 액상으로 처리하라고 하나 실제 물과 조직물의 비율이 거의 99 : 1 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폐기물로 보고 15일 이내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각 병·의원에 질의를 들여본 결과 매일 기기에서 빼내는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6개월내지 1년정도에 한번씩 꺼내게 되는데 꼭 조직물류로 처리하여야 하느냐는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경우에는 조직물의 함유율이 70%이상이면 폐기물로 본다 고 했는데, 전년도와 법규가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큰것은 아닌지요?

A

치아의 경우 보관방법에 대한 변경을 검토중인 결정사항은 추후 감독기관 및 배출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코나 가래 등을 기계를 이용하여 흡입한 경우 그 기계에서 꺼낸 후 부터 보관기간은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분뇨수집 운반업

Q

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관련(별표2)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기준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로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의 용량 합계가 '광역시' 지역은 7천500리터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천6백리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광역시'로 편제되어 있는 '군' 지역은 '그 밖의 지역(3천6백리터이상)'으로 인정받아 영업을 현행하고 있는바 타당한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광역시로 편제되어 있는 '군' 지역은 광역시로 분류가 되어야 되므로 차량 용량 기준은 7천500리터 이상을 적용받습니다. ㉔